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령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각종 법령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에 관한 특별법안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7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0.
3.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법령 등에서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하여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

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정의무교육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유치원 및 학교는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의무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종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해당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점검 및 이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실시횟수와 교육시간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바,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의무 부과교육의 실시로 인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외에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부과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제정안에 따른 경우 공공기관과는 달리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에 따라 의무부과교육의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이 받아야 할 의무부과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특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된 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법령으로 명시한 학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아닌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¹⁾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 「헌법」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주요 사항 검토

제정안의 제명은 「법령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으로, 본칙 4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다수 의무교육이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규칙 또는 조례에 근거한 의무교육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제명을 ‘법령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 것으로 보임²⁾.

본 칙	부 칙
제1조 목적	제1조 시행일
제2조 정의	
제3조 법정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	
제4조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책무	

가. 목적(제1조)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하며, 해당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별 조문을 해석·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 기능함³⁾.

2)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2건은 각각 제명을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356호),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6637호)

3)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p.239.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제정안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의 목적규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 제1조에 따르면 동 제정안은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의 횟수, 시수, 계획 및 평가·보고 등 사전·사후적 절차 등이 포함되는바,

만약 제정안의 취지가 교육의 ‘내용’에 관한 특례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적용에 관한 특례까지 규정하는 데 있다면 안 제1조 중 “교육 내용”을 “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법률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둘째, 동 제정안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타 특례법의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교육의 특례를 정함으로써”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제정안의 문구를 더욱 간결하게 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u>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u>교육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나. 정의(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정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는 동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법정의무교육”을 정의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함.

“법정의무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특례 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에는 유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외에 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도 있지만, 동 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정안이 ‘교육과정 외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정의한 것은 교직원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됨. 만약 교직원·학부모 등에 대한 의무교육까지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둘째, 특례 적용 대상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르면 ①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②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③ 교육과정 외의 교육 전부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 유치원 및 학교 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의무교육만이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제3조제1항 각 호에 나열하되 그 밖에 다른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의무교육도(안 제3조제1항19호) 특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의무교육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해당하고 그 밖에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를 둔 의무교육은 제19호를 통해 규율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른 자살예방교육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나열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법률에 새로운 의무교육이 추가로 규정되는 경우 동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제정안 제2조에서 “이 법에서 ”법정의무교육“이란 ~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하여 특례적용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 외에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유아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라고 명시한 것과 같이 학생을 표기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근거 조문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 제2조에서 말하는 “법령 등”이란 제정안 제3조제1항제19호와 제3조제2항의 규정으로 미루어볼 때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인 입법례를 살펴볼 때 법령을 행정규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 “법령 또는 자치법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제정안은 총리령·부령의 법규성 인정 여부와 무관히 모든 법규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서 ‘법령 등’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보다 명확한 법률해석을 위하여 제정안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른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약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제3조)

제3조(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른 협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8.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9.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0.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12.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인성교육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14.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16.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19. 그 밖에 다른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는 법정의무교육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전단), 전단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유치원과 학교가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후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2항).

제정안 제3조제1항 각 호는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 중 “법률”에 근거한 교육을 열거하는 한편, 제19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2조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적용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법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안 제3조제1항 후단은 유치원을 규정하면서 「유아교육법」 제7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인용조문을 유치원에 대한 정의규정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⁴⁾,

안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안 제3조제1항제19호와 제2항의 “법령, 시행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법령 등”으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제정안 제3조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안 제3조제2항 역시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인바, 교육실시·교육횟수·교육시간·결과보고 등 협의 내용의 대강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4)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⁵⁾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협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⁶⁾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해당 규정은 제정안 제3조제2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 현장의 혼란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첫째, 교육부는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범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 중 하나로 협의 주체에 교육부가 포함될 경우 협의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어 협의 주체에서 교육부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된 각 호의 법령을 다시 협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가 이미 특례법안 제3조제2항과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제·개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범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주체인 교육부를 협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라.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책무(제4조)

제4조(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책무)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이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등이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명확한 법률 해석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의무교육”은 제정안 제2조의 정의규정을 통해 정의되고 있으므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간략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86